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471
----------	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3년 3월 3일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를 개선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“사회적경제기업”의 정의에 “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”로 한정함(안 제2조제7호).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7호 중 “다음” 을 “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중 다음” 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“사회적경제기업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.</p> <p>가. ~ 바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----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중 다음-----.</p> <p>가. ~ 바.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7”을 “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제1호”로 한다.

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“사회적경제기업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.

- 가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「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
- 나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(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.)
- 다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정하는 마을기업
- 라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, 자활노동사업단(보건

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)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

- 마.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
- 바. 그 밖에 공유경제, 공정무역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

제3조의3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사회적경제계정

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2항제1호”를 “제2항제1호와 제3항제1호”로 한다.

③ 사회적경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시로부터의 전입금
2.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
3. 용자금 회수, 차입금, 예수금
4.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수입

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사회적경제계정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.

1.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

2. 사회,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투자 사업에 대한 지원
3. 기금의 관리·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

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투자계정과 용자계정”을 “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정”으로 한다.

-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·운영하며,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 1. 용자계정
 2. 투자계정
 3. 사회적경제계정

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분임기금운용관

- 가. 용자계정 : 소상공인담당관
- 나. 투자계정 : 경제정책과장
- 다. 사회적경제계정 : 공정경제담당관

3. 기금출납원

- 가. 용자계정 : 소상공인지원 담당사무관
- 나. 투자계정 : 펀드조성 및 운용 담당사무관
- 다. 사회적경제계정 : 사회적경제기업 담당사무관

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용자계정 : 소상공인담당관
2. 투자계정 : 경제정책과장
3. 사회적경제계정 : 공정경제담당관
4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, 민간경제단체 임직원, 금융인, 사회적경제 전문가, 중소기업인 및 교수 등 관계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)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
용자 및 투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
적경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16조 중 “제11조 및”을 “제11조, 제11조의2,”로 한다.

제19조 중 “제11조 또는”을 “제11조, 제11조의2,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 시행과 함께 ‘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’는 폐지한다.

제3조(기금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)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던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자산·채권 및 채무 등 권리·의무와 2022년 결산잉여금은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사회적경제계정에 승계된다.

②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이 조례의 사회적경제계정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보며, 2022회계연도 결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받은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 및 「<u>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</u>」 제62조의17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,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 「<u>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</u>」 제8조제1항제1호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“<u>사회적경제기업</u>”이란 「<u>중소기업기본법</u>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.</p> <p>가. 「<u>사회적기업 육성법</u>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「<u>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</u>」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</p> <p>나. 「<u>협동조합 기본법</u>」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(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.)</p> <p>다. 「<u>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</u>」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정하는 마을기업</p> <p>라. 「<u>국민기초생활 보장법</u>」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, 자활노동사업단(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)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</p>

제3조의3(계정 간의 구분) 제3조의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정을 구분한다.

1. 2. (생략)

<신설>

제4조(기금의 조성) ①·② (생략)

<신설>

③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제1항제1호와 제2항제1호에 따른 시의 기금전출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전출할 수 있다.

제5조(기금의 용도) ①·② (생략)

<신설>

③ (생략)

제6조(기금의 관리·운동)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·운동하며,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

기업

마.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

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

바. 그 밖에 공유경제, 공정무역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

제3조의3(계정 간의 구분) -----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사회적경제계정

제4조(기금의 조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사회적경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시로부터의 전입금

2. 기금의 운동으로 생기는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

3. 용자금 회수, 차입금, 예수금

4.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수입

④ -----
-----제2항제1호와 제3항제1호-----
-----.

제5조(기금의 용도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사회적경제계정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.

1.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

2. 사회,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투자 사업에 대한 지원

3. 기금의 관리·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

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제6조(기금의 관리·운동)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·운동하며,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

위하여 용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
<신 설>

② (생 략)

③ 시장은 투자계정과 용자계정의 지원사업 별 운영자금의 규모, 지원대상, 지원조건 등을 매년 기금운용계획 및 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.

④ (생 략)

제7조(기금관리공무원)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. 다만,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(계약사무 포함)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.

1. (생 략)

2. 분임기금운용관 : 소상공인담당관(용자계정), 경제정책과장(투자계정)

3. 기금출납원 : 소상공인지원 담당사무관(용자계정), 펀드조성 및 운용 담당사무관(투자계정)

②·③ (생 략)

제9조(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) ① (생 략)

하여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
1. 용자계정

2. 투자계정

3. 사회적경제계정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정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7조(기금관리공무원) ① -----

-----.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분임기금운용관

가. 용자계정 : 소상공인담당관

나. 투자계정 : 경제정책과장

다. 사회적경제계정 : 공정경제담당관

3. 기금출납원

가. 용자계정 : 소상공인지원 담당사무관

나. 투자계정 : 펀드조성 및 운용 담당사무관

다. 사회적경제계정 : 사회적경제기업 담당 사무관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(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위원장은 기금운용관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- 1. 용자계정: 소상공인담당관, 공정경제담당관
- 2. 투자계정: 경제정책과장

<신 설>

3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, 민간경제단체 임직원, 금융인, 중소기업인 및 교수 등 관계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

③ (생략)

<신 설>

제16조(지원계획의 공고 등) 시장은 매년 제11조 및 제12조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제19조(변경사항 통보)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용자지원을 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·대표자·소재지 및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, 해당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-----
-----.

- 1. 용자계정 : 소상공인담당관
- 2. 투자계정 : 경제정책과장
- 3. 사회적경제계정 : 공정경제담당관

4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, 민간경제단체 임직원, 금융인, 사회적경제 전문가, 중소기업인 및 교수 등 관계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1조의2(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)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융자 및 투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경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16조(지원계획의 공고 등) ----- 제11조, 제11조의2,-----
-----.

제19조(변경사항 통보) 제11조, 제11조의2,-----

-----.